제21장
제도 규정

제21.1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부속서 21-가에서 규정한 당사국들의 내각 수준의 대표 또는 그들의 지명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부속서 21-다에 언급된,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한다.

   다. 당사국들 간 무역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이 협정의 적용 결과를 평가한다.

   바. 이 협정의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사. 패널위원에게 지불될 보수 및 비용을 결정한다. 그리고

   아.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상설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라.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마. 자신의 절차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목적의 이행을 수정할 수 있다.

      1)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제외된 하나 이상의 상품을 추가허가나 관세 감축을 가속화할 목적으로, 부속서 2-나(관세 철폐)의 양허표

2)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설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당사국들이 개발할 수 있는 원산지 절차에 관한 통일 규정 및 부속서 3-다(원산지 증명서)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

3) 부속서 8-가(적용범위)

4) 부속서 14-가(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에 규정된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소호, 그리고

5) 패널을 위한 절차모범규칙 및 제22장(분쟁해결)의 행동강령, 그리고

사.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공동위원회 회의는 한국과 중미공화국 중 하나의 국가가 공동으로 주재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당사국들에 의하여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의 회기는 한국과 중미공화국 중 하나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그리고

나. 다른 당사국들에 서면통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이나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위치에서 또는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의 회의와 관련하여 또는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교환된 비밀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7.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기한 내에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3항바호에 언급된 모든 수정을 이행한다.

8. 공동위원회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양자 관계일 경우 제3항바호에 따라 결정을 채택할 때, 다른 당사국들에 의한 결정의 채택, 승인 및 이행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9.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미공화국의 하나 이상의 국가 간 양자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당사국들의 공무원이 회합할 때 회합하여 결정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중미공화국이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10. 제9항에 따라 공동위원회가 채택한 결정이나 권고는 그 결정이나 권고를 채택한 당사국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제21.2조
협정 조정자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21-라에서 규정한 협정 조정자 또는 당사국이 지명한 인을 임명한다.

2. 조정자는 의제를 발굴하고 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한 그 밖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 결정이나 권고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한다.

제21.3조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이 발효할 때까지는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의 지정은 이 협정의 특정 규정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의 특정한 지정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한다.

부속서 21-가
공동위원회

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장관(Ministro de Comercio Exterior)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장관(Ministro de Economía)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장관(Secretario de Desarrollo Económico)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장관(Ministr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그리고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Ministr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인

부속서 21-나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수정의 이행

1. 코스타리카의 경우, 제21.1조제3항바호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코스타리카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osta Rica) 제121.4조제3항(낮은 수준의 의정서)에 언급된 문서와 동등할 것이다.

2. 온두라스의 경우, 제21.1조제3항바호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온두라스 공화국의 정치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Honduras) 제21조에 언급된 문서와 동등할 것이다.

부속서 21-다
위원회 및 작업반

1. 위원회

가. 상품무역위원회(제2.16조)

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부속서 3-나)

다.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제4.13조)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위원회(제5.6조)

마.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제6.12조)

바. 정부조달위원회(제8.20조)

사. 금융서비스위원회(제11.16조)

아. 지식재산권위원회(제15.73조)

자. 노동위원회(제16.4조)

차. 환경위원회(제17.8조), 그리고

카. 협력위원회(제19.4조)

2. 작업반

가. 기업인의 일시적 입국 작업반(제12.7조)

부속서 21-라
협정 조정자

협정 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대외무역국장(Director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무역협정국장(Director de la Dirección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de Desarrollo Económico) 협정 운영 및 교섭국장(Director General de Administración y Negociación de Tratados)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대외무역국장(Director General de Comercio Exterior), 그리고

바. 파나마의 경우, 산업통상부(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통상협정운영 및 상업방어국장(Director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tados Comerciales Internacionales y Defensa Comercial)

또는 그들의 승계인